

## 착공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 고 인	법인등록번호	
	생년월일	
주 소	(전화번호: )	
승 인 번 호	승인일자	
대 지 위 치	지번	
착공예정일	사용검사 예정일	

※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·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(착공된 공구는 착공일)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① 설 계 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허번호	
			등록번호	
	사무소명		도급금액 (계약일자)	( ) 원
	주 소	(전화번호: )		

② 공사시공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허번호	
			등록번호	
	회 사 명		도급금액	원
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	도 급 계약일자	
주 소	(전화번호: )			

③ 공사감리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	면허번호	
			등록번호	
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	도급금액 (계약일자)	( ) 원
	주 소	(전화번호: )		

④관계전문기술자			
분 야	자 격 증	자 격 번 호	주 소
[ ] (서명또는 인)			
[ ] (서명또는 인)			
[ ] (서명또는 인)			

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인 \_\_\_\_\_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\_\_\_\_\_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</li> <li>2. 흙막이 구조도면(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3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</li> <li>4. 감리자(「주택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)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※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**근거법규**

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	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--------------	--

**유의사항**

「주택법」 제16조 제1항·제3항,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)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: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</li> <li>나. 「주택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: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</li> <li>2)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: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</li> </ol> </li> </ol> </li> <li>2.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[나목2)는 제외합니다]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</li> </ol>
---	--

**작성방법**

1. ① ~ ③ 다수인인 경우 "○○○ 외 ○인"으로 적으며, "○○○ 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2. ④ 「건축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.

**처리절차**

